

『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중화장실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 변경(안 제3조)
- 이용빈도와 현장여건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 기준 정비(안 제9조)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 완화(안 제12조)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정비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관광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인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